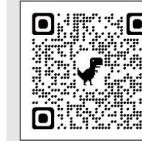




「2022년 10월 29일 지방직 7급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및 해설(1)

| 김재준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2022. 10월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론 자료 및 질문은 네이버카페 '김재준 행정학' 및 유튜브 '김재준 지방자치론TV'를 이용해 주세요.

01.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 ② 지방의 사무를 주민에 의해 처리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를 강조한다.
- ③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정답 : ③

[해설]

- ③ 제도적 보장설은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 ①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므로, 국가의 성립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 ② 중앙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
- ④ 헌법에 의해 수여된 권리로 본다.

02.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지방 토호 세력이 지역의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 ③ 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어렵게 한다.

정답 : ④

[해설]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용이하게 한다.

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학생인권에 대한 사항
- ②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한 사항
- ③ 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 ④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사항

정답 : ③

[해설]

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04.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②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③ 주민의 의무 및 주민소환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정답 : ③

[해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지방의회 권한 강화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장의 인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세부조항 등이 추가되었다.

05. 스톤(C. Stone)의 레짐이론(Regim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Atlanta) 지역사회 및 지방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방정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모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한다.
- ㄷ. 환경문제와 지역 내 삶의 질에 큰 관심을 두는 레짐의 유형은 중산층 진보레짐(middle class progressive regime)이다.

정답 : ②

[해설]

-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레짐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0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융으로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경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정답 : ①

[해설]

②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면 ·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제2항: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0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가 포함된다.
- ②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③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 ④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정답 : ④

[해설]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3항: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08.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